

##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2항

- 관** **연**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
-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2.>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⑤ 결제대행업체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
- [전문개정 2009.2.6.]

## 법이 문제다

여전법 19조 2항의 본인확인 의무 – 공인인증서나, 휴대폰본인인증을 통해 카드사용자임을 확인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간편결제도 복잡한 등록과정과 본인인증과정이 의무화 되어있다.

그래서 해외같은 간편결제 서비스가 나올수가 없는것

## 우리나라의 비대면 인증은 겨우 3가지?

**본인인증** 아래 인증방법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휴대폰 인증**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인증하기

**인증하기**

**아이핀 인증**



본인인증기관을 통해 아이핀 인증하기

**인증하기**

**공인인증서 인증**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하기

**인증하기**

· 입력하신 인증 정보는 본인 인증에만 사용되며 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 인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브라우저의 팝업 차단 기능을 해제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체계 안에서 가능한 비대면 인증방법은

인증방법	관련 근거법
공인인증서	전자서명법
SMS를 활용한 본인인증 / 아이핀	정보통신망법
<b>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인증</b>	금융실명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정보보호법

## 비대면 본인인증 서비스를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

본인인증 서비스 관련기관	문의 및 요청내용
한국인터넷진흥원(Root CA)	본인인증서비스를 위한 업무제휴 혹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비대면 인증서비스 제공가능여부 타진 ->본인인증 기관이 아니어서 불가능, 공인인증서 대체수단은 육성해야함... 그러나....
금융보안원	통합OTP서비스 운영경험, 금융권 통합의 비대면 인증서비스 필요성은 공감 -> 그러나 본인인증기관이 아니어서 불가 카드터치형 본인인증에 보안컨설팅받아라(보안성심의 혹붙음)
핀테크지원센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신용카드를 이용한 본인인증서비스 유권해석 서비스는 가능하나 본인확인기관만 할수있음->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를 소개 핀테크 데모데이를 통해 금융기관 연결 금융기관이 비대면본인인증서비스 도입의 가이드제시
미래창조과학부	신용카드를 이용한 본인인증서비스 좋은 방법같으나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망법에 의한 인허가권을 갖고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도 본인확인업무를 하지는 못함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아이핀 쓰면 되는데... 뭘 또 만드실려구.. (3개월뒤 이동함) 왜 카드사들이 본인인증기관 지정요구를 하죠? 본인인증기관 추가지정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사무관3번바뀜)
일부카드사	우리가 본인인증기관이 아닌데 해도되요? 확인업무나 수익배분에 대해 방통위에서 해도된다고 공문좀..

**결론 : 방통위가 지정한 본인인증기관만이 비대면 본인인증사업을 할수있음**

## 아직도 해결해야할 문제...

### 방송통신위원회

카드터치 본인인증(실명확인)은 금융권에서는 사용가능하나  
포털, 게임등 범용적 사용은 별도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며,  
임의로 하면 과태료대상이 될 수도 있음

정보통신 망법에 의해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은 신용평가사가  
이 업무를 하려면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함(기존 허가는 아이핀 업무만)

### 금융감독원

비대면 본인인증의 방법 4가지(신분증확인, 화상통화, 전달자확인, 기존계좌이  
용)중 2가지 선택, 추가 신기술도 허용함  
-> 추가신기술 지정은 없음, 금융기관이 알아서 판단해야함

### 신용카드사(일부)

카드터치 본인인증시 정보확인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받아도 될지 방송통신  
위원회로부터 문서답변을 받아달라

### 방송통신위원회

우리는 신용카드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답변은 곤란